

■ 국가배상법 시행령 [별표 6] <개정 2019. 11. 5.>

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(제5조 관련)

신체장해가 없는 상해의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1일에  
2만원